

2025)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4차 정오표 [2025.8.12.]

[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4-52	46번 보기	③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cm]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③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55	58, 59, 60, 61번 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물 화재층</th> <th>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th> </tr> </thead> <tbody> <tr> <td>2층 이상</td> <td>발화층, 그 직상층</td> </tr> <tr> <td>1층</td> <td>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전층</td> </tr> <tr> <td>지하층</td> <td>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전층</td> </tr> </tbody> </table>	대상물 화재층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2층 이상	발화층, 그 직상층	1층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전층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전층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물 화재층</th> <th>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th> </tr> </thead> <tbody> <tr> <td>2층 이상</td> <td>발화층, 그 직상 4개층</td> </tr> <tr> <td>1층</td> <td>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td> </tr> <tr> <td>지하층</td> <td>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td> </tr> </tbody> </table>	대상물 화재층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2층 이상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대상물 화재층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2층 이상	발화층, 그 직상층																		
1층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전층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전층																		
대상물 화재층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2층 이상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2025)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3차 정오표 [2025.3.5.]

[3과목 소방관계법규]

3-100 전체 변경

Ⅲ.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법

핵심 PLUS

2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1. 점검인력 1단위

구 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급점검자 1명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	보조 점검인력 2명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1명	보조 점검인력 2명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①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②	특급 (①은 제외)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③	1급 또는 2급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④	3급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점검한도면적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① 아파트 제외한 대상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점검	8,000[m ²]	10,000[m ²]	12,000[m ²]	14,000[m ²]	16,000[m ²]
작동점검	10,000[m ²]	12,500[m ²]	15,000[m ²]	17,500[m ²]	20,000[m ²]

② 아파트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점검	250세대	310	370	430	490
작동점검	250세대	310	370	430	490

4.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62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기 16]

- ① 12,000[m²] ② 10,000[m²]
- ③ 8,000[m²] ④ 6,000[m²]

답 : ③

2025)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차 정오표 [2025.2.25.]

[1과목 소방원론]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1-37	6.방화설비 방화문 1.방화문의 종류 및 설치장소 60+방화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u>갑종방화문</u>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u>출입문</u>
1-38	7. 소재목	불연재로인 경우	불연재로인 경우
1-38	핵심 PLUS 31번 문제	② 방화벽의 양쪽 끝은 <u>지붕면</u> 으로부터 0.2[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③ 방화벽의 위쪽 끝은 <u>자붕면</u> 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④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너비 및 높이가 각각 2.5[m] 이하인 <u>갑종방화문</u>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화벽의 양쪽 끝은 <u>건축물이 외벽면</u> 으로부터 0.2[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③ 방화벽의 위쪽 끝은 <u>지붕면</u> 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④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너비 및 높이가 각각 2.5[m] 이하인 <u>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지하구의 방화벽	② 방화벽의 출입문은 <u>갑종방화문</u> 으로 설치	② 방화벽의 출입문은 <u>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으로 설치
1-84	핵심 PLUS 20번 문제	① <u>마른모래</u>	① <u>마른모래</u>

[3과목 소방관계법규]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3-20	핵심기출문제 35번 문제	3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기 15] ① 1,500만원 ②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5,000만원 답 : ④	3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기 15] 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답 : ④
3-24	핵심기출문제 14번 문제	④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u>pm</u>]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u>m</u>]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75	7. 소화기구 설치~	② 터널, 지하구, <u>문화재</u> ,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② 터널, 지하구, <u>국가유산</u> ,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12.31일 법 개정)

<p>3-74, 4-60, 4-63, 과년도 기출문제 18P 74번, 33P 57번, 52P 56번, 99P 65번, 477P 69번</p>	<p>5. 자동화재속보설비~</p>	<p>①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②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④ 노유자 생활시설 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p>	<p>바닥면적과 상관없이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p>
		<p>⑥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p> <p>⑦ 노유자시설</p> <p>⑧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p> <p>아래로 수정 (24.12.31일 법 개정)</p>	<p>바닥면적이 500 [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p>
<p>3-85</p>	<p>12 성능위주설계 대상 표 교체</p>	<p>① 삭제 ②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④ 노유자 생활시설 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p>	<p>바닥면적과 상관없이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p>
		<p>⑥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p> <p>⑦ 노유자시설</p> <p>⑧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p>	<p>바닥면적이 500 [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p>

구 분	층 수	지상으로부터 높이	연면적
① 아파트등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200[m] 이상	-
② 아파트등 제외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120[m] 이상	20만[m ²] 이상
③ 도시철도 및 철도시설, 공항시설	-	-	3만[m ²] 이상
④ 창고시설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3만[m ²] 이상	-	10만[m ²] 이상
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권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⑥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m] 이상인 터널			
<p>⑦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면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중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p>			

3-102	3.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표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인력 등 업종별</th> <th colspan="2">기술인력</th> <th>영업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문 소방시설 관리업</td> <td rowspan="2">주된 기술인력</td> <td colspan="2">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td> <td rowspan="3">모든 특정소방대상물</td> </tr> <tr> <td rowspan="2">보조 기술인력</td> <td>고급점검자 이상</td> <td>2명 이상</td> </tr> <tr> <td>중급점검자 이상</td> <td>2명 이상</td> </tr> <tr> <td rowspan="3">일반 소방시설 관리업</td> <td rowspan="2">주된 기술인력</td> <td colspan="2">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td> <td rowspan="3">1급, 2급, 3급</td> </tr> <tr> <td rowspan="2">보조 기술인력</td> <td>중급점검자 이상</td> <td>1명 이상</td> </tr> <tr> <td>초급점검자 이상</td> <td>1명 이상</td> </tr> </tbody> </table>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1급, 2급, 3급	보조 기술인력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1급, 2급, 3급																									
		보조 기술인력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p>아래로 수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인력 등 업종별</th> <th colspan="2">기술인력</th> <th>영업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문 소방시설 관리업</td> <td rowspan="2">주된 기술인력</td> <td colspan="2">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td> <td rowspan="3">모든 특정소방대상물</td> </tr> <tr> <td rowspan="2">보조 기술인력</td> <td>고급점검자 이상</td> <td>2명 이상</td> </tr> <tr> <td>중급점검자 이상</td> <td>2명 이상</td> </tr> <tr> <td rowspan="3">일반 소방시설 관리업</td> <td rowspan="2">주된 기술인력</td> <td colspan="2">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td> <td rowspan="3">1급, 2급, 3급</td> </tr> <tr> <td rowspan="2">보조 기술인력</td> <td>중급점검자 이상</td> <td>1명 이상</td> </tr> <tr> <td>초급점검자 이상</td> <td>1명 이상</td> </tr> </tbody> </table>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1급, 2급, 3급	보조 기술인력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1급, 2급, 3급																									
		보조 기술인력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119	18번 해설 교체	<p>해설 18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 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것은 제외)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다.</p>		<p>해설 18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m²]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다.</p>																									
3-152	핵심기출문제 22번 정답	22. ㉒		22. ㉔																									

[과년도 기출문제]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3	2024년 1회 5번 해설	<u>해설</u> LNG, LPG	<u>해설</u> LPG											
21	2024년 2회 4번 문제	④ 0[°C]의 얼음 1[g]이 0[°C]의 액체 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u>응융열</u> 은 약 80[cal/g]이다.	④ 0[°C]의 얼음 1[g]이 0[°C]의 액체 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u>용융열</u> 은 약 80[cal/g]이다.											
30	2024년 2회 42번 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u>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u></td> <td>경고</td> <td>영업정지 3개월</td> <td>등록취소</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로 수정</p>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u>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u>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u>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u>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u>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td> <td>경고</td> <td>영업정지 3개월</td> <td>등록취소</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u>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u>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1	2024년 2회 46번 문제	②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u>필요</u> 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②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u>필요</u> 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40	2024년 3회 4번 해설	$6\text{NaHCO}_3 + \text{Al}_2(\text{SO}_4)_3 \cdot 18\text{H}_2\text{O} \rightarrow 2\text{Al}(\text{OH})_3 + 3\text{Na}_2\text{SO}_4 + 6\text{CO}_2 + 18\text{H}_2\text{O}$ <p>탄산수소나트륨 <u>황산알루미늄</u> <u>수산화알루미늄</u> <u>황산나트륨</u></p> <p>아래로 수정</p>												
		$6\text{NaHCO}_3 + \text{Al}_2(\text{SO}_4)_3 \cdot 18\text{H}_2\text{O} \rightarrow 2\text{Al}(\text{OH})_3 + 3\text{Na}_2\text{SO}_4 + 6\text{CO}_2 + 18\text{H}_2\text{O}$ <p>탄산수소나트륨 <u>황산알루미늄</u> <u>수산화알루미늄</u> <u>황산나트륨</u></p>												
51	2024년 3회 49번 문제	①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u>1.5</u>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①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u>1.5[m]</u>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